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6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립생활’의 정의와 권리 신설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추가	3
2.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 및 예산 지원의무 신설	9
3.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개편	13

I. 개요

1.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등 29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

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다. 주요내용

-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2)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립생활’의 정의와 권리 신설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정안은 현행법에 ‘자립생활’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 제10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에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 상황, 생활시설 거주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생략) 5. 장애인의 <u>안전관리에</u> 관한 사항 6. <u>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신설></u> ③ ~ ⑥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자립생활에</u> ----- 6. <u>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u> ----- 7. <u>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은 2008년 12월, 우리 국회가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련 내용과 취지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립생활’의 개념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권리 주장과 정책 요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참고자료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현황).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및 관련 조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다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을 규율하고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2024.7.18., 의안번호 제1937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2024.8.6., 의안번호 제2591호) 등 총 2건의 제정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현재 계류 중인 두 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립생활의 정의 및 권리’를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 및 관련 제정안 내용 비교 >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공발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삶을 보장하고, 포용적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④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 상황, 생활시설 거주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앞의 표에서 보듯이 개정안과 두 제정안은 자립의 의미에 있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에 차이가 있음.

자립의 정의 규정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는 두 제정안이 의미론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임.

□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법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됨.¹⁾

□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정사항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

1)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에 대한 전 부처 차원의 협력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는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9대 정책 분야 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²⁾에 관한 사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시지역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2.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 및 예산 지원 의무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중증장애인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장애 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하반기 장애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 >

(단위: 명)

장애정도 \ 지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및 고용률
중증(심한 장애)	929,660	226,612(24.4%)	218,030(23.5%)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1,659,387	689,970(41.6%)	662,899(39.9%)

주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주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4.4.

-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 및 성과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제02-03차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제02-03차 최종견해(2022) CRPD/C/KOR/CO/2-3 장애인권리위원회

근로 및 고용(제27조)

5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할 것.

- 개정안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엔 장애인권리협

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임.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직무에 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3대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사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의 개방성이다. 시설과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의 형태로 폐쇄성을 띠고 운영해왔던 장애인 노동 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무를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 활동**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권익옹호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포함한다.

문화예술활동은 미술, 음악, 연극과 관련된 활동으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모든 예술활동을 포함한다.

인식개선활동은 장애인권 강사양성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직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지자체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러한 직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2023).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보고서.

□ 참고로, 현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³⁾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및 홍보’ 등과 같이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도 있음(참고자료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또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현황).⁴⁾

- 주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함.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 조항 신설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최근 서울시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였음.(박송이, (2024.1.27.). 서울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70900021>)

3.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개편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의 장 제목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지원 신청,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 자립생활주택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고, 설치·운영 기준, 수행업무 내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제5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장 <u>자립생활의 지원</u>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4장 <u>자립생활 권리보장</u> 제53조(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 향유와 역량의 발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u>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1. <u>장애인의 장기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u>

<신 설>

<신 설>

<신 설>

2. 시설 입소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상담·교육·홍보

3.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개인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임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간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직업 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전 과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

<신 설>

<신 설>

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거나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사,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2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시설 입소 이전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신 설>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3. 장애인 개인이 계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의 제공

4. 중증장애인 1일 최대 24시간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 권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자립생활주택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기간 자립생활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각종 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주택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및 육성에-----

③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1개소 이상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강화
2.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신 설>

<신 설>

<신 설>

6.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7.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⑥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32조의4
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 및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조
사 및 판정, 이의신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료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시설 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
1항 및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중단하도록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
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2(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
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
립생활지원을 위해 매년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
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또는 소
속 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
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운

<신 설>	<u>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54조의3(자립생활 권리의 홍보)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장애인, 장애인가족,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홍보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가. 자립생활지원(안 제4장 제53조~제53조의4)

-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장 제목을 ‘자립생활의 지원’에서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자립생활지원 관련 조치를 시설 퇴소를 희망하거나,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및 자립생활주택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의 규정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37호, 이하 ‘김예지의원안’이라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91호, 이하 ‘최보윤의원안’이라 함)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2건의 제정 법률안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들 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대상자의 범위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장애인의 범주 안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립이 시급한 장애인을 우선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임.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제53조(자립생활지원) 관련, 김예지의원안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최보윤의원안 제9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26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4항에서와 같이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특정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개정안 제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관련, 김예지의원안 제17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최보윤의원안 제17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 개정안 제53조의3(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관련, 김예지의원안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최보윤의원안 제26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 개정안 제53조의4(자립생활주택 제공) 관련, 김예지의원안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최보윤의원안 제27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정안 및 관련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53조(자립생활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 향유와 역량의 발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1. 장애인의 장기 시설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제26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9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입소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시설 입소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상담·교육·홍보 3.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개인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 임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간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직업 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 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9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u>	<u>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전 과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u>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 53조의2(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거나 시설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지원 필요도 조사,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① <u>자립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	제 17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① <u>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④ 제62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입소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시설 퇴소 및 전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2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시설 입소 이전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3. 장애인 개인이 계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의 제공 4. 중증장애인 1일 최대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권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9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제53조의4(자립생활주택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기간 자립생활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각종 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주택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를 공공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 대상으로	제27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8조

개정안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부령으로 정한다.	<u>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제3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절차, 제4항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안 제4장 제54조~제54조의3)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⁵⁾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게 의해서 선정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참고자료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사업).

-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체 252개소 중 75개소로 파악되며, 개소당 총 1억 6,000만원(국비 6,400만원, 지방비 9,600만원, 4:6 비율)을 받고 있음.

5)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황 >

('23년 기준, 단위 : 명/개소)

구분	장애 인구 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	389,795	75
부산	175,467	18
대구	130,521	7
인천	152,226	5
광주	69,314	10
대전	71,440	7
울산	51,383	6
세종	12,944	2
경기	586,421	58
강원	100,520	4
충북	97,117	9
충남	134,004	8
전북	130,189	7
전남	136,472	13
경북	178,340	2
경남	188,825	19
제주	36,918	2
계	2,641,896	252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개편하게 되는데, 이는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901호)⁶⁾에 따라 장

6)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901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규정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지게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고, 기능과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⁷⁾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37개소, 약 15%), 장애인자립생활센터(204개소, 약 81%), 기타(11개소, 약 4%)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기능과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기관임에도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함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80%가 넘게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의무 신설 및 설치기준 명시

-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

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할 의무가 있고, 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센터의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자생적 조직으로 설치 등에 있어 신고의무가 없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⁸⁾에 대해 사업비 지원 및 설치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동 센터의 당사자성, 자생성 등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수행 업무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참여

-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업무로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강화, ②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 ③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④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⑥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⑦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등을 규정하면서,

현행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⁹⁾에 참여할 수

8)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52개소 중 비영리민간단체는 194개소(77%), 법인은 58개소(23%)임.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있으며, 이에 관한 동료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다만, 이 중 ‘②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업무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④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관련, 특정 기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관련, 일자리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3항 제3호¹⁰⁾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달체계상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이하생략.

10)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참여와 관련, 장애당사자의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제도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당사자 외 제3자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동 제도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 등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참여로 당사자의 욕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또는 소속 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에 관해 장애인, 학생, 근로자, 그 밖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및 자립생활에 관한 교육과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권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됨.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486	41.0
학대행위자 거주지		93	7.8
기타 거주지		13	1.1
직장(일하는 곳)		60	5.1
교육기관		66	5.6
일반 의료기관		5	0.4
정신 의료기관		6	0.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98	16.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9	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0.7
	장애인생산물품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
	소계	245	20.7
그 외 보호시설(쉼터)		3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9	2.4
정신요양시설		1	0.1
정신재활시설		2	0.2
아동관련시설		2	0.2
노인관련시설		-	-
기타 복지관련시설		6	0.5
종교시설		5	0.4
미신고시설		-	-
온라인		25	2.1
상업시설		56	4.7
기타		76	6.4
파악 안 됨		7	0.6
계		1,1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다만,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¹¹⁾

< 인권지킴이단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수	783	85	30	22	27	29	41	18	4	169	43	43	41	49	44	73	44	21
단원 수	4,489	457	165	114	164	160	226	103	20	1045	261	220	231	286	252	397	262	126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I」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는 연 1회(4시간), 직원의 경우는 연 2회(8시간)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음.¹²⁾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과 관련, ① 개정안에서와 같이 특정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또는 소속 강사가 인권교육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시설 운영의 자율

11)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12)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②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권리 홍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25조의3에 근거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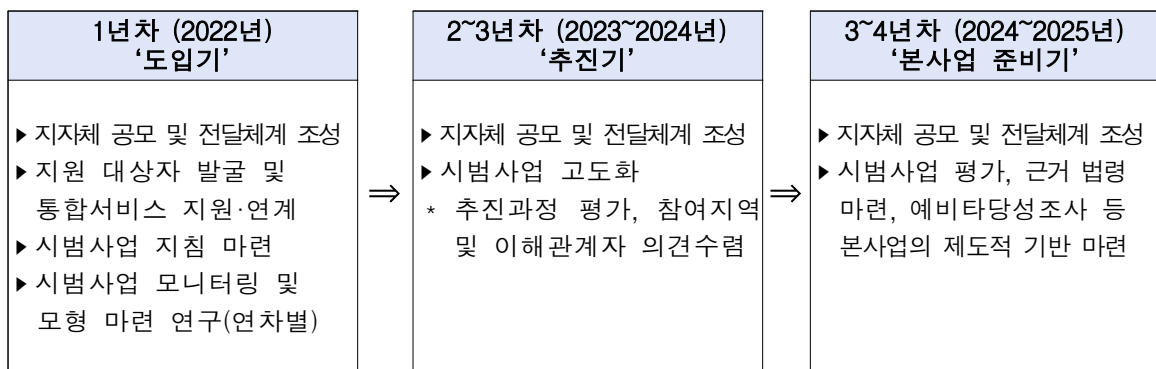
□ 사업 목표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6년)을 위한 ①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장애 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광역시 7, 기초 23)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
 -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사업예산) ('22) 22억원 → ('23) 48억원 → ('24) 60억원 (국비 기준)
- (자립현황) 171명(시설 131명, 재가 40명 / 발달장애인 138명 / 8월 현재)
- (주택) 264호(국토부(LH),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 8월 현재)
- (사업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
 -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장애인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 등
- (사업기간) '22~'25년(4년간 총 600명 자립 목표) ※ '26년 본사업 전환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 사업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일자리수) 31,546명('23년 대비 +2천명)
- (예산액) 2,227원('23년 대비 +154억원)
- * 예산의 99%는 인건비(임금, 퇴직금) 및 인건비성 운영비(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로 구성
- (근무기간) 1년 단위(1.1~12.31),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수행기관

☐ 연도별 일자리수(예산)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7	'10	'15	'20	'21	'22	'23	'24
일자리수	4,990	6,920	14,879	22,396	24,896	27,546	29,546	31,546
참여자수	3,986	6,717	15,084	22,609	24,507	30,330	32,446	-
예산	8,164	20,430	66,203	141,520	159,593	185,315	207,299	222,695

☐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 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 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참여기 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래인	미취업 안마사
주요업 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 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06만원	103만원	55만원		129만원	129만원
일자리 수	7,640명	3,975명	17,294명		1,277명	1,360명
국고보조 율	서울 30%, 지방 50%					전체 80%

☐ 2024년도 복지일자리 직무 유형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1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2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 등)
3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4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5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6	건강검진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7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8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9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업무
10	온라인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 광고물, 저작물 등 관련 기관 신고 및 모니터링 업무
11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12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13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14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활동보조, 재활치료사업 등)
15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16	디앤디케어(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17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18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19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20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업무 (행사장 내·외부 시설 및 정리, 프로그램 지원, 이용객 안내 등)
21	문화예술 활동	합창공연, 미술활동,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업무 또는 보조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22	스포츠영상촬영 및 편집	스포츠선수의 연습 및 경기 장면을 촬영·편집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업무
23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양한 체육활동 분야에서 체육지도자(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를 보조하거나, 체육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
24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기초학습, 생활예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업무
25	발달장애인특화 활동지원사보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 활동지원사의 업무(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를 보조하는 업무
26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27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28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29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30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31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이동보조기기 분해·세척 및 소독·조립과 간단한 경정비 업무
32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다회용품 대여, 세척, 소독 관리 업무
33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34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35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36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37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소독, 종류별 작동여부 확인 등)
38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파기 등)
39	농업·임업·어 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40	정리 및 수납	취약계층 가정, 공공기관 등의 정리 및 수납 업무 수행
41	방역·소독활동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하는 업무

연 번	직무명	주요내용
42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새 활용) 또는 리사이클링(재 활용) 제품 분류/적재/제작/판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환경분야 전반의 업무
43	정신장애 특화 동료지원활동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언, 사회활동 지원
44	농아인-농아인 케어	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생활정보 및 복지정보제공, 민원처리 동행 지원
45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치료환경 관리, 환자 대기 및 이송돕기, 운동치료, 전문치료 돕기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방식			소요예산(백만원)			참여 자	비고 (특이사항)
		계	매칭	자체	계	시도	시군구		
계		57	52	5	15,295	10,859	4,437	1,261 (737)	-
부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8	8	-	315	157	157	34	중구, 서구, 영도, 해운 대 등 8개 미시행
인천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9	9	-	520	260	260	66	옹진 미시행
광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	-	1	73	73	-	6 (6)	
경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	-	2	8,942	8,889	53	677 (677)	경기(①, ②), 시흥(①) 자체사업
강원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5	4	1	1,012	305	707	85 (44)	춘천은 매칭·자체 사 업 모두 시행
충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	-	1	101	-	101	10 (10)	제천 자체사업
전북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6	6	-	1,247	250	997	146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등 8개 미시행
전남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0	10	-	2,088	625	1,463	120	담양, 곡성, 구례, 함평 등 12개 미시행
경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5	15		997	299	698	117	함안, 고성, 합천, 미시행

※ 사업방식의 ‘매칭’은 시도-시군구 공동 사업, ‘자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

참여자의 괄호는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사업 참여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사업〉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지역사회 자립 위한 정보제공,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자조 및 자기옹호, 자립기술,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지역사회로의 전환, 동료 관계 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이용자 중심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교육, 차별 대응 및 법률지원 연계 활동 -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및 긴급구제 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장애인 지역사회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변화 지원 - 장애인 권익항상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타 복지증진 활동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등)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별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금융피해, 법률지원 등 연계) - 개인별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지역사회 자립 위한 자원 정보제공 - 지역사회 거주 지원 위한 상담(고립감 해소 등) - 자립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거주 지원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협력 - 자립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자원개발 활동(정부 자원 외 추가 자원개발, 후원개발 등)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 교육, 의사소통 지원 -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지원활동 - 재난 피해 예방 및 응급안전서비스 연계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활동지원서비스, 고용 및 직업 서비스 연계 - 기타 자립생활 지원 위한 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참고자료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 (사업개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대신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조사
 - * (현행 7종)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이동지원 2종
- (조사도구)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 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종합조사표’
 - * 활동지원은 36개 지표 모두 사용, 다른 서비스들은 일부 지표만 활용

< 종합조사표 구성 >

구분		아동 (만 6세 ~ 18세)	성인 (만 19세 ~ 64세)
I. 일반사항		신청인의 기본 인적사항, 신청 서비스 유형,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상황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환경 파악	
II. 서비스 필요도 평가	합계	27개 지표	36개 지표
	기능제한	20개 지표	29개 지표
	일상생활동작	9개 지표	13개 지표
	수단적일상생활동작	6개 지표	8개 지표
	인지행동특성	5개 지표	8개 지표
	사회활동	2개 지표(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5개 지표 (독거, 취약, 조손, 한부모,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III.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계획		희망하는 서비스 종류 및 이용횟수 확인	

- (조사방법) 대상자를 방문, **종합조사표와 평가매뉴얼**에 따라 **대면** 조사
- (평가점수) 평가지표별 조사 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 산출
 - * 종합점수에 따라 해당 서비스 수급 적격 여부, 급여량 등을 결정
- (업무량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1)}	2023년	2024년 ^{주2)} (추계)	2025년 (추계)	2026년 (추계)
조사건수 (건)	62,423	61,650	62,907	58,489	86,251	88,288	96,433	124,551
활동지원 수급자수 (명)	105,569	115,017	127,363	139,509	151,259	165,780	181,695	199,137

주1) '22년 8~11월 행복e음 개통지연으로 종합조사 신청 일시 공백 발생

주2) '22년 종합조사 신청공백을 감안, '23년 건수에 19~21년 평균 증가율 12.8%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